

## 29. 오스트리아(Austria)

###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06년(연금, 1909년 시행), 1938년(보험, 1939년 시행)
- 현행법 : 1955년(사회보험, 1956년 시행), 1978년(자영자, 1979년 시행), 1978년(농민), 1978년(전문직종), 2004년(연금 통합, 2005년 시행)
- ※ 1955년 법은 2005.1.1에 50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적용. 2004년 법은 2005.1.1에 50세 미만인 가입자에게 적용되고 다양한 특별제도 통합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소득이 월 €438.05 이상인 사무직 근로자와 임금노동자 및 견습생
- 특별제도 : 광부, 공증인, 공공부문 근로자, 산업 및 무역·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 자영자

### 4. 재원조달

- 가입자 : 월 급여 총액의 10.25%
  -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하한액 : 월 €438.05
  -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상한액 : 월 €5,130
- 자영자 : 해당없음
- 사용자 : 월 임금지급총액의 12.55%
  -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하한액 : 월 €438.05
  -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상한액 : 월 €5,130
- 정 부 : 보조금, 간병급여 및 소득조사수당의 비용

###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급여
  - 노령연금
    - 65세(남성) 또는 60세(여성,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65세로 상향) 1955년 이전 출생 가입자는 마지막 30년 내에 180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 혹은 크레딧 인정기간, 총 300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 혹은 크레딧 인정기간, 총 180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 2005년 이전

납부 혹은 크레딧 인정 기간이 없는 1955년 이후 태어난 가입자는 84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해 180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 혹은 크레딧 인정기간이 있어야 함. 1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 혹은 크레딧 인정기간이 있는 1955년 이후 출생 가입자에게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

- 부양, 군복무, 질병, 출산 혹은 실업급여 수령기간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보험료 크레딧 부여가능
- 가입자가 15세이후 받은 교육,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소급 납부가능
- 조기연금 : 540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 혹은 크레딧 인정 기간이 있는 62세(남성, 2017년까지 65세로 상향) 또는 516개월 이상 (2022년까지 540개월로 점진적 상향)의 보험료 납부 혹은 크레딧 인정기간이 있는 58세여성(2027년까지 62세로 상향)
- 연기연금 : 연금 연기 가능. 나이 제한 없음
- 노역연금 : 최종 240개월 내에 120개월 이상의 노역기간을 포함하여 540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혹은 크레딧 인정기간이 있는 60세(여성 노역 연금은 2028년에 유효. 그때까지 여성은 60세에 노령연금 혹은 조기연금 청구가능)
- 연계연금 : 62세 도달자로 월 €438.05 이상의 소득이 있고 480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혹은 크레딧 인정기간이 있는지(여성의 경우 2028년에 유효. 그때까지는 60세에 노령연금 혹은 조기연금 청구 가능)
- 아동지원금 : 18세(학생 또는 훈련생인 경우 27세,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미만 각 자녀마다 지급
- 장기간병수당 : 가입자가 장기 개별 필요시 간병 7단계의 간병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 보충 지원금(소득조사)
  - 가입자의 총 월 소득(연금, 다른급여, 배우자 소득 을 포함)이 월 최저액 미만 시 지급
  - 월 최저액은 360개월 미만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독신의 경우 €909.42, 360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독신은 €1,022, 결혼 커플의 경우에는 €1,363.52, 18세 미만 자녀(학생이나 훈련생은 27세, 장애아는 제한 없음)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140.52을 합산
- 노령연금은 해외지급 가능

#### ○ 장애급여

- 장애연금(소득조사)
  - 소득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자에게 지급. 가입자는 최종 10년(50세 이후의 1개월마다 2개월 추가) 중 보험료 납부 또는 크레딧 인정기간이 60개월(50세

이후의 1개월마다 1개월 추가) 이상, 보험료 납부나 크레딧 인정기간이 300개월 이상 또는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이어야 함.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 보험료요건 완화됨.

- 부양, 군복무, 질병, 출산 혹은 실업급여 수령기간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보험료 크레딧 부여가능
  - 가입자가 15세 이후 받은 교육,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소급 납부가능
  - 소득조사 : 가입자의 월 소득이€1,196.09를 초과하면 연금이 철회됨.
  - 아동지원금 : 18세(학생 또는 훈련생인 경우 27세,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미만 각 자녀마다 지급
  - 장기간병수당 : 가입자가 장기 개별 필요시 간병 7단계의 간병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 보충 지원금(소득조사) : 가입자의 총 월 소득(연금, 다른급여, 배우자 소득을 포함)이 월 최저액 미만시 지급
  - 월 최저액은 360개월 미만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독신의 경우 €909.42, 360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독신은 €1,022, 결혼 커플의 경우에는 €1,363.52, 18세 미만 자녀(학생이나 훈련생은 27세, 장애아는 제한 없음)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140.52을 합산
- 장애연금은 해외지급 가능

####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 유족범주 : 홀아비 나 과부( 혹은 동성파트너), 특정 이혼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학생, 훈련생의 경우엔 27세, 장애아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보충 지원금(소득조사) : 유족의 총 월 소득(연금, 다른급여, 배우자 소득을 포함)이 월 최저액 미만 시 지급
  - 월 최저액은 과부나 홀아비의 경우 €909.42, 24세 미만 자녀의 경우 €334.49(완전고아의 경우 €502.24) 혹은 24세 이상 자녀는 €594.40(완전고아의 경우 €909.42)
- 유족연금은 급여의 해외지급 가능

###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 노령급여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년당 기본평가액의 1.78% 지급

- 기본평가액 : €4,252.67을 한도로 소득이 가장 높았던 30년 동안의 재평가된 가입자 평균소득(평가기간은 2028년에 40년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12개월씩 점진적으로 증가)
- 1955.1.1 이후에 출생한 가입자의 경우, 연금은 매 1년간 납부총액에 총 납부기간에 대한 재평가된 연간 납부총액을 14로 나눈 값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됨
- 조기연금 : 급여는 정상 퇴직연령이전에 청구된 매 년마다 4.2%씩 감액됨
- 연기연금 : 정상 퇴직 연령후 매 연기 연마다 4.2%씩 증가
- 노역연금 : 급여는 정상 퇴직연령이전에 청구된 매 년마다 4.2%씩 감액 (가입자가 1954년 이후 태어났다면 1.8%)
- 연계연금 : 급여는 정상 퇴직연령이전에 청구된 매 년마다 0.425%씩 감액됨
- 아동지원금 : 매월 €29.07이 각 자격있는 자녀에게 지급
- 장기간병수당 : 월 €157.30부터 €1,688.90까지 필요한 간병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 보충 지원금(소득조사)
  - 가입자의 총 월 소득(연금, 다른급여, 배우자 소득을 포함)과 월 최저액 차액 지급
  - 월 최저액은 360개월 미만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독신의 경우 €909.42, 360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독신은 €1,022, 결혼 커플의 경우에는 €1,363.52, 18세 미만 자녀(학생이나 훈련생은 27세, 장애아는 제한 없음)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140.52을 합산
  - 지급일정 : 연 14회
  - 연금액 조정 : 매년 조정

## ○ 장애급여

- 장애연금
  - 가입기간 1년당 기본평가액의 1.78% 지급
  - 가입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60세까지 가입한 것으로 추정
  - 기본평가액 : €4,252.67을 한도로 소득이 가장 높았던 30년 동안의 재평가된 가입자 평균소득(평가기간은 2028년에 40년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12개월씩 점진적으로 증가)
  - 최대연금 : 기본평가액의 60%
  - 1955.1.1 이후에 출생한 가입자의 경우, 연금은 매 1년간 납부총액에 총 납부기간에 대한 재평가된 연간 납부총액을 14로 나눈 값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됨
  - 소득조사 : 연금은 월 소득 €1,196.09부터 €1,794.20의 경우 소득의 30%까지, 월소득 €1,794.21부터 €2,392.17의 경우 40%

월소득 €2,392.17 초과시 50%까지 감소.

- 아동지원금 : 월 €29.07이 자격있는 각 자녀에 지급
- 장기간병수당 : 월 €157.30 부터 월 €1,688.90이 간병 수준에 근거해 지급

- 보충 지원금(소득조사)

- 가입자의 총 월 소득(연금, 다른급여, 배우자 소득을 포함)과 월 최저액 간 차액 지급
- 월 최저액은 360개월 미만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독신의 경우 €909.42, 360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독신은 €1,022, 결혼 커플의 경우에는 €1,363.52, 18세 미만 자녀(학생이나 훈련생은 27세, 장애아는 제한 없음)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140.52을 합산
- 지급일정 : 1년에 14회 지급
- 연금액 조정 : 매년 조정

- 유족급여

- 배우자연금

- 사망자 소득 대비 배우자 소득 비율에 따라, 배우자에게 사망자 노령연금의 최대 60%까지 지급
- 보충 지원금(소득조사) : 배우자의 총 월소득(연금, 다른급여를 포함)과 월 최저액 간 차액 지급
- 월 최저액은 배우자의 경우 €909.42

- 고아연금

- 각 자격 있는 고아에게 배우자연금의 40%(완전고아인 경우 60%) 지급
- 보충 지원금(소득조사) : 자녀의 총 월소득(연금, 다른 급여를 포함)과 월 최저액 간 차액 지급
- 월 최저액은 24세 미만 아동은 €334.49(완전고아는 €502.24), 24세 이상은 €594.40(완전고아는 €909.42)
- 지급일정 : 1년에 14회 지급
- 연금액 조정 : 매년 조정

## 7. 관리운영기관

- 연방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Federal Ministry for Labor, Social Affairs and Consumer Protection, [www.sozialministerium.at](http://www.sozialministerium.at)), 연방재정부(Federal Ministry of Finance, [www.bmf.gv.at](http://www.bmf.gv.at))

- 전반적 감독

- 연방오스트리아사회보험청(Federation of Austrian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 [www.sozialversicherung.at](http://www.sozialversicherung.at)
  - 선출된 가입자 및 사용자 대표로 이루어진 자치 연금기관으로 구성됨
  - 제도 조정
  
- 연금보험청(Pension Insurance Institution)
  - [www.pensionsversicherung.at](http://www.pensionsversicherung.at)
  - 모든 연금의 85% 관리운영
  
- 질병금고(Sickness funds)
  - 보험료를 징수하여 연금보험청에 송금
  - 개별 근로자의 보험료에 관한 기록 유지

<2018년 ISSA 자료>